

수원지방법원 2021. 8. 19 선고 2020가합15723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수원고등법원 2022. 4. 13 선고 2021나22202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8. 19 선고 2020가합15723 판결

전문

원고한국무역보험공사의 소송수계인 채무자 주식회사 A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B

원고보조참가인한국무역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기풍 담당변호사 송명근, 송성락

피고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공

담당변호사 김승아, 시문한

변론 종결2021. 7. 8.

판결 선고2021. 8. 19.

주문

1. 피고와 채무자 A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1 기재 부동산 및 별지2 기재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 기계기구에 관하여 ① 2018. 6. 26.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2018. 12. 27.자 변경계약 포함), ② 2018. 10. 18.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2018. 12. 27.자 변경계약 포함)은 각 부인되어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금전거래 및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행위

(1) 피고는 2017. 10. 10.부터 2018. 5. 28.까지 A 주식회사(이하 '채무자회사'라 한다)에 총 22억 3천만 원을 대여하였다.

(2) 채무자회사는 2018. 6. 26. 채무자회사 소유의 별지1 기재 부동산 및 별지2 기재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 기계기구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A 주식회사, 채권최고액 24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2018. 6. 26.자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3) 채무자회사는 2018. 10. 18. 채무자회사 소유의 별지1 기재 부동산 및 별지2 기재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 기계기구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A 주식회사, 채권최고액 50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2018. 10. 18.자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채무자회사에 대한 파산선고 등

채무자회사는 2001년경 코스닥 상장을 하였으나, 2010년 이후 경쟁 심화, 매출 하락 등으로 2018.

4.경 외부감사인이 감사의견을 거절하고, 2018. 10.경 코스닥 상장이 폐지되는 등 경영 및

재정상황이 매우 어려워졌고, 이후 채권자들의 신청에 따라 2019. 9. 27. 수원지방법원 2019회합3호, 142호(병합)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

회생절차의 관리인은 2020. 5.경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별지1 기재 부동산 및 별지2 기재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 기계기구를 회생계획인가 전 영업양도의 방식 등으로 매각하고, 청산형 회생계획안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수원지방법원은 2021. 1. 27. 채무자회사에 대한 위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에서 부결되었음을 이유로 회생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을 하였고, 2021. 2. 16. 관리인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회사에 대하여 건련파산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의 소송수계

원고보조참가인은 2019. 4. 3.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채무자회사가 회생절차를 거쳐 건련파산을 선고받음으로써 채무자회사의 파산관재인인 원고가 위 소송절차를 수계하고 부인의 소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2. 부인권 행사의 적법여부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이 사건 2018. 6. 26.자 및 2018. 10. 18.자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한 각 회생담보권은 채무자회사에 대한 회생절차 중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절차에서 관계인의 이의 없이 확정되어 회생담보권자표에 기재되었으므로, 건련파산절차의 파산관재인은 회생담보권에 대하여 부인권 행사로 다룰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을다 제14, 15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채무자회사에 대한 회생절차 중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절차에서 이 사건 2018. 6. 26.자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한 회생담보권에 대하여 관계인의 이의가 없어 회생담보권자표에 기재된 사실은 인정된다¹⁾ {이에 대하여 원고는, 회생절차의 관리인이 회생담보권 시·부인표 중 부동산 담보물 배분표 비고란에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권(한국무역보험공사)"라고 기재함으로써 이의를 하였거나 조건부 시인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회생담보권 시·부인명세서에 회생담보권의 신고액이 23억 8천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전액이 시인액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부인액란에 아무런 기재가 없고, 이에 법원사무관이 작성한 회생담보권자표에도 이의 없이 전액을 시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나 ① 채무자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인가 전 폐지된 점, ② 담보권에 대한 조사확정절차는 회생절차의 고유한 제도로써, 파산절차에서는 담보권에 대한 조사확정절차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③ 회생절차에서의 회생담보권과는 달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담보권을 가진 자는 그 목적인 재산에 대하여 별제권을 가지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11조}, 파산절차에서의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할 수 있으며(같은 법 제412조), 파산채권처럼 반드시 신고·조사절차를 거쳐 확정되어야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점2)

④ 파산관재인이 별제권인 담보권의 무효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채권조사확정절차가 아닌 통상의 소송절차 등에 의하여야 하는 점, ⑤ 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5항은 "회생계획인가결정 전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제3편(파산절차)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2편(회생절차)에 의한 회생채권의 신고, 이의와 조사 또는 확정은 파산절차에서 행하여진 파산채권의 신고, 이의와 조사 또는 확정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회생채권'에 관하여는 간주규정이 있으나, '회생담보권'에 관하여는 회생절차에서의 신고, 이의와 조사 또는 확정을 파산절차에서의 신고, 이의와 조사 또는 확정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⑥ 채무자회생법 제168조는 '확정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을 회생채권자표 및 회생담보권자표에 기재한 때에는 그 기재는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의 취지는 회생채권자표 및 회생담보권자표에 기재된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의 금액이 회생계획안의 작성과 인가에 이르기까지의 회생절차의 진행과정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의 권리행사의 기준이 되고 관계인집회에 있어서 의결권 행사의 기준이 된다는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서, 위 법조에서 말하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라 함은 기판력이 아닌 확인적 효력을 가지고 회생절차 내부에 있어 불가쟁의 효력이 있다는 의미에 지나지 않는 점(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4096 판결,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8685 판결,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4다3512, 3529 판결 등 참조), ⑦ 파산관재인의 부인권의 행사 및 이에 따르는 법률관계의 확인은 채무자나 선행 회생절차의 관리인이 기존에 형성한 법률관계에 따른 관리·처분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파산관재인이 파산채권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선임된 관리자로서 채무자 또는 선행 회생절차의 관리인과는 독립된 지위에서 채무자회생법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견련파산절차에서의 파산관재인은 선행 회생절차 중 조사확정절차에서 회생담보권이 이익 없이 확정되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담보권의 부존재를 이유로 별제권의 승인을 거절할 수 있고,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및 원고보조참가인 ① 고의부인: 채무자회사는 2017. 4.경부터 재정상황의 악화가 가시화되었고, 채권자들의 파산신청 등으로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2018. 6. 26. 및 2018. 10. 19. 피고와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는 채무자회사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에 따라 이를 부인한다.

② 무상부인: 채무자회사는 감사거절의견이 공시된 2018. 4. 9.경, 또는 늦어도 일반금융채무가 연체된 2018. 12. 14.경 지급정지 사유가 있었는데, 그 전 6개월 이내에 행하여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은 그에 상응하는 피담보채권 없이 체결된 무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4호에 따라 이를 부인한다.

③ 비본지 위기부인: 채무자회사는 2017. 10. 10.부터 2018. 5. 28.까지 피고로부터 2,230,000,000원을 차용하며 담보제공을 약정한 바 없음에도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피고에게 지급정지(2018. 4. 9. 또는 늦어도 2018. 12. 14.)나 파산신청(2019. 5. 8.)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1년 이내에 의무에 속하지 않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으므로,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3호에 따라 이를 부인한다.

(2) 피고 ① 고의부인에 대하여: 피고는 채무자회사로부터 물적 담보를 제공받기로 구두 약정하고

채무자회사가 자금 유통을 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2017. 10. 10.부터 2018. 5. 28.까지 22억 3,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이 사건 2018. 6. 26.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 받은 후 2018. 7. 2. 2억 3,000만 원을, 2018. 7. 11. 1억 5,000만 원을 추가 대여한 후 이 사건 2018. 10. 19.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채무자회사의 신규 자금 유통과 이를 통한 기존 사업의 계속 추진을 위한 것으로 행위의 유해성이 인정되지 않고, 채무자회사의 사해의사가 존재하지 않으며, 피고는 선의이다.

② 무상부인에 대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은 피고의 채무자회사에 대한 대여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므로 무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비본지 위기부인에 대하여: 피고는 채무자회사로부터 물적 담보를 제공받기로 구두 약정하고 금전을 대여하였으므로, 채무자회사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것을 의무 없는 편파행위로 볼 수 없다. 또한 채무자회사는 2018. 9. 14.에 이르러서야 지급정지 상태가 되었으므로, 그보다 선행하여 행하여진 2018. 6. 26.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은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나. 고의부인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으로 되는 행위인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는 총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파산재단으로부터 일탈시킴으로써 파산재단을 감소시키는 행위뿐만 아니라 특정한 채권자에 대한 변제나 담보의 제공과 같이 그 행위가 채무자의 재산관계에 영향을 미쳐 특정한 채권자를 배당에서 유리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파산채권자들 사이의 평등한 배당을 저해하는 이른바 편파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6637, 56644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일반재산의 유지·확보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취소권의 경우와는 달리, 이른바 편파행위까지 규제 대상으로 하는 채무자회생법상의 부인권 제도에 있어서는 반드시 해당 행위 당시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상태에 있어야만 행사할 수 있다고 볼 필요도 없고, 행위 당시 자산초과상태였다 하여도 장차 파산절차에서 배당재원이 재단채권과 파산채권을 전부 만족시킬 수 없는 이상, 그리고 그러한 개연성이 존재하는 이상, 일부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를 한다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것은 다른 채권자들이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아야 할 배당액을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부인권

행사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다271 판결 등 참조).

다만,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신규차입과 동시에 교환적으로 행하여졌고, 그 차입금과 담보 목적물의 가격 사이에 합리적인 균형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로써 채무자가 차입금을 은닉하거나 증여하는 등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처분을 할 우려를 생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담보제공행위는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어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각호에 따라 부인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24044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고의부인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 것'을 필요로 하는데, 특히 편파행위의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법이 정한 부인대상행위 유형화의 취지를 물각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거래 안전과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파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채권자평등의 원칙을 회피하기 위하여 특정 채권자에게 변제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지만, 더 나아가 파산채권자 등에 대한 적극적인 가해의 의사 내지 의욕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4다1813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갑 제1 내지 5, 20, 24, 28, 31 내지 38호증, 을다 제3, 5, 14, 15, 18,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행위는 채무자회사가 채무초과 내지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특정 채권자인 피고에게 물상보증을 제공함으로써 피고를 유리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채무자회사의 파산채권자들 사이의 평등한 배당을 저해하는 이른바 편파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회사는 당시 채권자평등의 원칙을 회피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담보를 제공한다는 인식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행위는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한 고의부인 대상 행위에 해당한다3).

① 채무자회사는 2001년경 코스닥 상장을 하면서 2010년경까지는 꾸준히 성장하였으나, 이후 시장의 경쟁 심화와 성장 둔화로 매출이 하락하였고, 2017. 4.경 경쟁사인 주식회사 E 인수를 통해 시장지배를 확보하려고 하였으나 무리한 인수 자금 마련과 투자 실패로 재정난에 빠지게 되었다.

② 채무자회사의 채권자들은 2017. 4.경부터 2017. 11.경까지 채무자회사에 대하여 3번의 파산신청을 하였고, 이에 채무자회사에 대하여 2017. 4. 27.부터 2017. 4. 28.까지, 2017. 8.

21.부터 2017. 9. 20.까지, 2017. 11. 13.부터 2018. 1. 5.까지 코스닥 시장에서의 거래정지가 행해졌다.

③ 채무자회사에 대한 2017년 결산 재무제표를 회계감사한 감사법인은 '지분투자 및 자금흐름의 정당성 부족과 자금의 회수가능성 부족, 특수관계자의 범위 및 거래 내역에 대한 완전성과 정확성 파악불가, 지속된 영업손실과 유동성 부족에 따른 계속기업가정의 불확실성' 등을 사유로 감사의견을 거절하였고, 2018. 4. 9. 위 감사법인의 감사거절의견이 공시되었다. 이는 상장폐지사유에 해당하는데, 이후 채무자회사는 사유 해소에 실패하여 2018. 10. 11. 코스닥 상장이 폐지되었다.

④ 채무자회사는 2015년 약 22억 원의 영업손실의 발생을 시작으로 2016년 약 80억 원, 2017년 약 113억 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하였고, 2018년부터 주 거래처인 F에 대한 부품 공급에서 제외되면서 2018년 약 126억 원, 2019년 7월까지 약 65억 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하였으며, 당기순손실액은 2015년 약 8억 9천만 원, 2016년 약 179억 원, 2017년 약 260억 원, 2018년 약 276억 원에 이르렀고, 적자가 누적되면서 2018. 8. 부터는 급여 지급이 어려울 정도로 유동성이 악화되었다.

⑤ 채무자회사는 2018. 9. 14.경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연체 등으로 인하여 위 은행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채무자회사와 사이에 수출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던 한국무역보험공사가 2018. 12. 14. 위 은행에 채무자회사의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하였다.

⑥ 2018. 8. 14. 수정된 2018. 6. 30.자 기준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채무자회사의 자본잠식율은 14.3%이다.

⑦ 이에 채무자회사의 채권자들 중 일부는 2019. 5. 8. 수원지방법원 2019회합3호로, 다른 일부는 2019. 6. 7. 같은 법원 2019회합142호로 각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9. 6. 12. 위 두 사건을 병합하는 결정을 한 다음 2019. 9. 27. 채무자회사에 대하여 제3자 관리인을 선임하고 회생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하였다.

⑧ 채무자회사의 2018. 6. 30. 기준 재무제표에 따르면, 부채총계는 35,588,489,697원이고, 자본총계는 15,921,129,606원이다.

⑨ 채무자회사는 피고로부터 ㉠ 2017. 10. 10. 4억 원, ㉡ 2017. 10. 27. 5,000만원, ㉢ 2017. 12. 5. 14억 원, ㉣ 2018. 3. 14. 1억 5,000만 원, ㉤ 2018. 5. 11. 1억 원, ㉥ 2018. 5. 28. 1억

3,000만 원의 합계 총 22억 3,0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채무자회사의 회생절차에 대한 관리인 및 파산절차의 파산관재인인 원고는 피고의 채무자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존재 및 액수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고 있다), 차용 당시 작성한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는 채무자회사가 피고에게 근저당권 등 물적 담보를 제공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기재가 없다.

⑩ 피고는 위 22억 3,000만 원을 대여한 후인 2018. 6. 26. 비로소 이 사건 2018. 6. 26.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그 후인 2018. 7. 2. 2억 3,000만 원을, 2018. 7. 11. 1억 5,000만 원을 채무자회사에 추가대여하였는데4), 피고는 이 사건 2018. 6. 26.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회생절차에서는 23억 8,000만 원으로 신고하였고, 이 사건 소송에서는 26억 1,000만 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5). 또한 피고는 2018. 10. 18. 채무자회사로부터 이 사건 2018. 10. 18.자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는데, 피고는 이 사건 2018. 10. 18.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존재 및 액수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않고 있다.

⑪ 앞서 기재한 사정들에 따르면 채무자회사는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2018. 6. 26.경 및 2018. 10. 18.경 지급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앞서 기재한 법리에 따르면, 지급불능 상태에서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한 것이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보기 위해서는 '담보 제공이 신규차입과 동시에 교환적으로 행하여지고, 그 차입금과 담보 목적물의 가격 사이에 합리적인 균형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바,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2018. 6. 26.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대부분 위 근저당권이 설정되기 전에 발생한 것으로 담보 제공이 신규차입과 동시에 교환적으로 행하여졌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채무자회사가 차용 당시 피고에게 근저당권 등 물적 담보를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이 사건 2018. 10. 18.자 근저당권에 대하여는 그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주장·증거가 없다. 따라서 채무자회사가 일부 특정 채권자인 피고에게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설정해줌으로써 담보를 제공하는 것은 다른 채권자들이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아야 할 배당액을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부인의 대상이 된다.

다. 피고의 선의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채무자회사의 요청에 따라 금원을 대여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받은 것일 뿐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행위가 파산채권자들을 해하게 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하는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부인할 수 없으나, 그와 같은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 자신이 그 선의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6637, 5664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행위 당시 채무자회사의 파산채권자들을 해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악의 추정을 뒤집고 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앞서 기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와 채무자회사의 실질 사주가 같은 점6), 피고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 당시 공개된 채무자회사의 재무제표를 통하여 채무자회사의 영업손실 및 당기순손실액이 상당하고, 자본 잠식의 상태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 당시 채무자회사의 파산채권자들을 해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안승호

판사김보현

판사전지은

별지

1) 회생담보권자표에 기재된 피담보채권액은 23억 8천만 원인바, 이 사건 2018. 10. 18.자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한 회생담보권(채권최고액: 50억 원)에 대하여도 관계인의 이의가 없이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실무상 별제권자는 그 피담보채권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면서 담보물에 의해서 변제받을 수 있는

예상액수를 함께 신고하고 있으나, 이는 회생담보권자가 신고를 통해 회생담보권을 확정하는 것과는 달리, 별제권의 행사에 의해 채권 전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파산절차에 참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배당을 받기 위해 채권신고를 하는 것에 불과하다.

3) 원고의 고의부인 주장을 받아들이므로, 무상부인·비본지 위기부인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4)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2018. 6. 26.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으로 2017. 10. 10.부터 2018. 5. 28.까지의 대여금 총 22억 3,000만 원만을 주장하다가, 2021. 5. 24.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2018. 6. 29.자 2억 3,000만 원, 2018. 7. 2.자 2억 3,000만 원, 2018. 7. 11.자 1억 5,0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추가 주장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2018. 6. 29.자 2억 3,000만 원은 피고가 아닌 채무자회사가 피고에게 입금한 것임을 지적하자 2018. 6. 29.자 2억 3,000만 원에 한하여 주장을 철회하였다. 또한 피고는 채무자회사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2018. 6. 26.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23억 8,000만 원으로 신고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의 채무자회사에 대한 2018. 7. 2.자 2억 3,000만 원의 채권이 진정한 것인지 의문이나, 이 사건의 쟁점이 아니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5) 반면 피고가 회생절차에서 신고한 피담보채권액은 23억 8,000만 원이다.

6) G이 채무자회사, 피고, 주식회사 H 등의 실질 사주였던 것으로 보인다.